

기고

기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최근의 세계적 동향과 대응방향



자식경제부 기술표준정책국장 최형기

서 론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보호무역조치들이 확산되어 국제교역을 더욱 감소시킴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G20 정상들은 보호무역조치들을 동결(stand-still)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요 국가 간에 일반적 보호무역조치들에 대해 국제적 감시체제가 도입되어 경계가 강화됨에 따라, 수입제한 등 전통적인 자국산업 보호조치들이 대폭적으로 도입되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도입에 제약이 적은 기술규제들이 무역장벽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WTO의 TBT¹⁾ 위원회에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신규/개정 기술규제에 대한 통보문 및 동 위원회 정례 회의에 상정하는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의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단순히 기우만은 아닌 듯 하다.

미국의 동향

미국은 다자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보호주의적 성

격의 조치들을 배격·감소시키자는 주장을 전개하면서, 양자적으로는 특정 교역대상국의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중점을 두고 대처하려는 무역장벽들은 SPS²⁾ 및 TBT인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향후의 보호주의적 무역장벽으로서 기술규제들이 새롭게 지목되고 있는 추세와 일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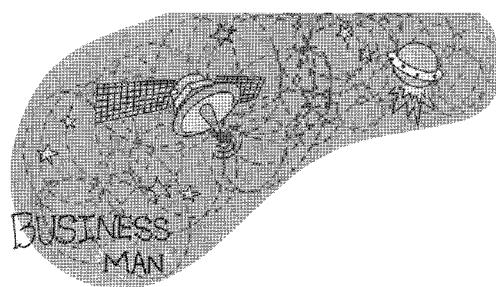
우선 미국 의회에서는 외국의 SPS 및 TBT 조치들이 미국의 수출에 방해가 될 경우 이에 대하여 Special 301조³⁾에서와 유사한 형태로 상대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Trade Enforcement Bill)이 '09.1.14일 하원 세법위원장 및 무역소위 위원장 등에 의해 발의되었다.

또한 행정부에서는 USTR의 Ron Kirk 대표가 ① Special 301 보고서 유형의 TBT·SPS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을 밝히고, ② 반덤핑·상계관세제도 활용 및 ③ 노동조항이행 모니터링 강화 등 무역협정 집행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연설 이후 USTR은 외국

1)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인증 등)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장해요소

2)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동식물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각국이 시행하는 위생 및 검역조치

3) 미국의 종합무역법 (Omnibus Foreign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182조로서 지재권 분야에만 적용하는 규정. USTR에게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내용을 평가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흡한 국가 중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협상을 하도록 위임. 협상 결렬시 상품이나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 보복이 가능토록 규정.



“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보호무역조치들이 확산되어 국제교역을 더욱 감소시킴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G20 정상들은 보호무역조치들을 동결(stand-still)하기로 합의하였다.

”



의 TBT 및 SPS 조치들이 ① 국제무역의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을 경우, ② 미국 상품의 진출을 제한하는 조치일 경우, ③ 무역에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조치일 경우에 대해 감시 및 보고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USTR의 고위자문관인 Tim Reif는 '09.9.22 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의지로 외국의 TBT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USTR은 외국의 TBT 사례들에 대한 업계 의견을 '09.9.24일부터 11.4일까지 취합하겠다고 공지하였다. 이러한 의견 취합은 Special 301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사용되는 방법이다.

USTR이 취합한 우리나라 관련 TBT 사례

USTR이 동기간 동안 업계 및 관련 단체들로부터 취합한 외국의 SPS 및 TBT 사례는 총 193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은 이 중 17건으로서 SPS관련이 9건, TBT관련이 8건이었다. TBT 관련사항 중에서는 6건이 식품과 농산품의 인증 및 라벨링에 관련된 사항이었으며 공산품의 적합성 평가절차 및 표준에 대한 의견은 2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동 의견에 관련되는 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한미 FTA에 있어서도 자동차의 조세와 냉장고 관련 기술규제문제가 선결되어야 비준을 할 수 있다고 보도된 샌더 레빈(Saunders Levine) 미 하원 무역 소위 위원장 등 의회내 일부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규제를 주목할 것으로 관찰되며, 이와 더불어 미 행정부에서는 충분한 사전 통보없이 새로운 에너지효율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국내 모 전자업계의 냉장고에 대한 에너지스타 라벨을 제거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소송에 까지 이르는 상황이 되고 있는 등, 기술규제가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동향

'09년 7월 WTO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도 전통적으로 취해오던 관세나 무역쿼터를 피하고 기술규제를 확대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실제로 개도국의 TBT 통보문 비중이 '08년도의 60% 수준에서 '09년 1~5월 사이 개도국 통보문 비중이 80%까지 상승하였다.

중국이 '07년 8월부터 WTO를 통해 정보보안제품 인증제도(ISCC)의 시행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고, 동 제도가 국제무역에 장애가 될 것이며 기업의 기술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왔다. 또한 에콰도르는 전 수입 공산품에 대한 시

협성적서 및 적합성 인증서를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규제를 '08년 12월 공포하고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전통적으로 수입쿼터, 덤펑조사 등 보호무역을 취해왔으나 최근 들어 철강재관련 기술규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국과 유사한 기술 보호무역주의적 조치가 보고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09.5월부터 인니 표준청(SNI)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09.7월부터 선적전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09.8월부터 말레이표준(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태국도 '09.5월부터 인증요건을 강화하여왔다.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

USTR이 취합한 외국의 SPS 및 TBT에 대한 자국 업계 의견들은 '10년에 발간될 SPS/TBT 연차보고서 작성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후에는 미국이 무역관련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무엇이 특히 유해한 TBT인가를 공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즉 몇몇 TBT사례를 공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해당국가에게 국제적인 창피를 주려 한다는 ("name and shame") 것이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USTR의 의견취합 및 보고서 발간 등 최근의 행보가 자국내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불만 해소차원이며, 의회 및 노조 등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조치를 요구하는 그룹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도 있어 주목할 만하다.

우리정부의 대응

중국의 정보보안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국제공조를 통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을 강구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미국 USTR과 일본 경산성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공조 대응하는 한편, 중국 관계당국과 직접 양자협의를 한 결과, 동 제도의 시행을

1년 연기하고 시행범위를 정부조달로 한정하도록 하는 등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에콰도르의 규제에 대응하여 TBT 중앙사무국에서는 국내 업계의 우려 및 질의사항을 에콰도르 규제기관(OAE)에 전달하였고, 미국, 일본 등과 공조하여 에콰도르측의 시행을 강력히 저지한 바, 최종적으로 180일 유예조치를 취하던 즈음 제도를 철회하였다. 이와 같이 TBT 중앙사무국은 각종 TBT현안을 다각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의 새로운 기술규제와 관련하여서는 TBT 중앙사무국에서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해당국가의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협의한 결과, 시료제출 수를 줄이고, 인증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증지연 및 중복인증 등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다.

보호무역의 논란을 피하면서도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 조차도 기술규제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 환경 및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WTO 협정에서도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 보호무역에 대한 미국의 여러 가지 조치들은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 확대가 시급한 우리나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기술규제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통보 및 의견수렴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WTO 협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하여서는 기존의 대응을 넘어서 각국의 규제가 태동되는 시기부터 미리 입수하여 국내적인 준비체계를 갖추고 무역경쟁력을 높이는 등 기술 보호무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보호무역주의에 체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